■ 치과 칼럼

자가혈 이식 임플란트 장점은 빠른 골유착!

살다 보면 노화나 예기치 못한 사고, 잇몸병 등 다양한 이유로 치아를 잃 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자연치아 대체재로 적은 갯수라면 임플란트와 브릿지, 많 은 치아를 상실했다면 틀니가 대표적 입니다.

틀니는 비용이 저렴하고 많은 치아 를 잃은 경우와 고혈압 등 전신질환이 심각한 경우에 적합하지만 단점으로 자연치아에 비해 저작력이 약하고 덜 그럭거리는 등의 불편을 느낄 수 있습 니다. 그래서 심미성이 좋고 자연치아 의 저작력을 70~80%까지 구현해내 어 씹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임플란 트를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비록 '제3의 치아' 라 불 릴지라도 수명이 존재하는 반영구적 인 시술입니다. 즉 한 번 식립하면 평 생 쓸 수 있으리라 여기는 사람이 많지 만 사실 통상적인 유지 기간은 10년 내 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초 기 확실한 방법의 시술이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시술은 과거에 비해 완성 도도 높아지고 치과의 의술 발달과 시 술 경험 축척 등으로 부작용이 최소 화되면서도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 게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가혈 이식(PRF)은 상당히 선진화된 방법으 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가혈 임플란트' 란 PRF 프로토 콜을 통해 혈액 내 성장인자를 추출하 여 식립에 사용하는 치료 방법입니다. 환자 본인의 혈액을 소량 추출해 사용 하기 때문에 부작용 및 거부 반응이 적다는 특징이 있으며, 잇몸뼈 형성과 빠른 골유착 및 지혈, 회복 등을 유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 술을 원하지만 거부반응이 걱정되는 사람, 당뇨나 골다공증 및 기타 전신

질환을 앓는 사람, 노년층과 임플란트 치료 기간을 단축하고 싶은 분이라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본다면 '자가혈 임플란트'는 자신의 혈액을 채취해 혈액 안에 있는 성장인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자가 성장인자 추출 위한 전용 원심분리기 에서 약 10~12분간 초당 약 3,000회 정도의 회전력으로 회전하면 혈액이 네 층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중 세 번 째 층에 상처가 생겼을 때 빠르게 회복 시켜 줄 수 있는 성장인자인 피브리노 겐(Fibrinogen) 트랜스폼 정장인자 베 El(transforming growth factor-beta), 골 형성 단백질 등이 농축됩니다. 이 렇게 채취된 성장인자는 골 이식재와 섞어 골이식에 이용하게 되면, 염증에 저항하고 안정된 골 형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 가루 형태로 돼 있는 골 이식재들 이 잘 뭉쳐져서 수술 후 빠져나가거나 부피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 수술 결과 를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자가혈 임플란트 역시 타 시술과 마찬가지로 신중하지 않으 면 드물게 통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 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분석을 객관 적으로 판독할 수 있는 숙련도가 필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경험이 풍 부한 의료진이 직접 집도하는지, 첨단 장비 등을 갖추고 있는지, 시술 후 관 리에 대해 얼마나 신경을 써주는지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술 병원을 선 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Micheal Han D.D.S Harbor Implant & Cosmetic Dentistry TEL (714) 773-9999



■ 법률 칼럼

최근 이민국 소식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있었던 미 이 민국 관련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5월3일까지 이민국 대면 접촉 서비스 잠정중단 연장

최근 이민국은 5월3일까지 영주권/시 민권 인터뷰, 시민권 선서식, 지문채취, 인포패스 등의 대면 접촉 서비스 잠정 적 중단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 취업이민 급행 서비스(Premium Service) 장적적 중단

이민국은 취업이민 청원서 I-140과 종 교비자, H-1B, E-2 비자 청원서 I-129 에 대한 급행 서비스를 잠정적으로 중 단한다고 지난달 발표했습니다.

3. 답변서 제출에 대한 Deadline 기한

이민국은 추가서류 요청, 거절 의향 서에 대한 답변과 재심 신청에 대한 Deadline을 30일 (33일 서면으로 요청 서를 받은 경우)에서 60일로 연장한다 고 발표했습니다.

4. 일시적으로 오리지널 사인 요청에 대 한 규정 완화

이민국은 오리지널 서류가 존재하는 한 의뢰인이 서명한 서류의 스캔본 복 사본도 접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 면 접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인 것 같습니다.

5. 서류 수속은 계속

대면 접촉 서비스만 일시 중단됐을 뿐 영주권 및 E-2, 종교비자, 신분 변경 등 의 각종 서류 수속은 계속되어 접수증, 승인서 등이 3월 4월에도 모두 잘 이슈 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3월 마 지막 주 4월 첫 주까지 처리된 이민 관련 업무는 영주권 승인서 5개 배달, 그리고 학생신분 변경도 2개 승인, E-2 연장 등 의 신청서도 승인되었습니다.

6. 복지혜택 수혜관련 서류 추가 및 증

거제출 요구

지난 2월25일부터 영주권 신청서 및 각종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 시 (종교비 자/취업비자) 신분 변경 시에 복지 혜택 수혜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 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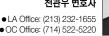
7. 영주권/시민권 신청 시 범죄 관련 서 류 심사 강화

영주권/시민권 신청 시 범죄 관련 기 록이 있으신 분들은 그 관련 범죄가 어 떻게 종결되었는지에 대한 서류를 인 터뷰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 다. 즉 형을 받으신 분들은 그 형을 모두 마치셨고, 또 벌금을 받으신 분들은 그 벌금을 완납하신 기록을 요구했었습 니다. 이를 위해 이민국은 법원 Docket Report나 Minute 즉 사건의 History 를 보여주는 법원 서류를 요구했었습니 다. 그러나 최근에는 단순히 법원 서류 로 사건의 종결(Dismiss, Closed or fine paid)을 보여 주는 것을 넘어서 경찰의 체포 보고서, 경찰 보고서, 검찰의 공소 장까지 요구하고 있어 많은 주의가 요망 됩니다. 단순히 벌금형을 받으신 경우도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 에는 꼭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 니다.

8. 3월말 H-1B 사전 접수를 통한 추첨 완료

4월1일부터 90일간 접수가 시작되었 습니다. 추첨에 뽑히신 분들은 전문가 의 도움을 받으시고 즉시 접수를 시작 하시기 바랍니다.





OC Office: (714) 522-5220

